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기 관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구, 서구

내 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에서는 2012. 7. 26.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 탐방 누리길 조성사업'(L=5,000m)를 위한 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 450,000,000원을 교부받아 2015. 6. 30.까지 344,147,24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렇듯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3개 구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총 2,550,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423,530,700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사업기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합 계			2,550,000,000	2,423,530,700	126,469,300
광 산 구	소 계		720,000,000	613,695,530	106,304,470
	○○○ 탐방 누리길 조성사업	2012.07.26 ~ 2015.06.30.	450,000,000	344,147,240	105,852,760
	○○마을 여가복지 조성사업	2013.08.14 ~ 2015.12.31.	270,000,000	269,548,290	451,710
동 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13.03.26 ~ 2015.12.23.	990,000,000	979,995,870	10,004,130

공사명		사업기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서 구	소 계		840,000,000	829,839,300	10,160,700
	○○○로 정비공사	2014.02.07 ~ 2016.05.16.	390,000,000	387,379,500	2,620,500
	○○○○길 조성사업	2015.02.09 ~ 2016.05.19.	450,000,000	442,459,800	7,540,20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구, 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회계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에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된 보조금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에서는 2012. 7. 2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 탐방 누리길 조성사업’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45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344,147,2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05,852,760원을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이 완료된 2015. 6. 30.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2017. 9. 29.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잔액 105,852,760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았다.

이렇듯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3개 구에서는 [표]와 같이 5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총 2,550,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423,530,7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26,469,300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6,304,47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04,13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160,70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